

## 6. 학사학위취득 유예

가.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학칙 제21조에 규정된 학위수여 요건을 전부 갖추고도 일정기간 동안 졸업 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신청자격: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으로 교과목 재수강 또는 자기개발이 목적인 학생

※ 조기졸업 신청자 및 외국인 유학생은 신청 제외하며, 자기개발 목적으로 유예를 신청한 자는 (재)수강신청 불가함

다. 유예기간 및 횟수: 학기 단위로 2회(총 1년)까지 허용

라. 신청방법: 학생포털 웹서비스(inSTAR) → 학사관리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마. 등록금 납부

1) 교과목의 재수강을 위해 수강신청한 학생은 계절학기 수강료 징수기준에 따라 등록금 납부

2) 자기개발이 목적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 감면(※ 직업설계세미나(1), (2) 수강한 경우 포함)

바. 유의사항

1) 학사학위취득 유예학생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2) 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학기 개강일 전까지 유예 포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에는 휴학할 수 없음

4)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탈락한 경우 그 신청은 당연 취소됨

5) 유예 신청자격과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병역기피 등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자에 대해서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사. 기타 졸업연장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지침’에 의한다.